의안번호	2202477
의 뢰 인	김태년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계번호	24E25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제1호 (정의)	○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 (현행) 연초의 잎 또는 이외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개정안) 연초의 잎,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제1호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합성니코틴 관련 국내분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집계되지 않는 가운데[1]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은 주로 전자담배 용액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

1)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RS-Nicotine, CAS No. 22083-74-5) 국내생산분의 시중 유통판매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2) 관세청 분류기호 HS2404121000(전자담배용 용액 Solutions for electronic cigarettes)로 현재 통관 과정에서 과세되고 있는 천연니코틴 원료 전자담배 용액은 시중에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합성니코틴 원료 전자담배 용액은 일반용기 형태로 수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개정안의 재정수입 변화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합성니코틴 시장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만 집계되고 있어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합성니코틴은 완제품보다는 원재료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통관 이후 제조·판매자의 제품가공 및 판매 방식 등에 따라 과세대상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3)]

– 또한, 중량단위로만 집계되는 통관자료로는 용액과 용기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과세단위인 니코틴 용액 부피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3)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담배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반면, 전자담배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변형 전자담배가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시 시장 행위자가 행태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